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 근거 마련〉

■ 김용태·천하람·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1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용태 · 천하람 · 민병덕의원 등 35인
2. 제안일 : 2024. 9. 20.
3. 회부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열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Ⅲ. 검토의견: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¹⁾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 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 족회, <u>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u> <u>회</u> ,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 · 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 명공로사회, 재일학도의용군동 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사회 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 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 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 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제1조(목적) ----- ----- ----- <u>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u> , <u>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u> ----- ----- ----- ----- ----- ----- ----- ----- -----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

제3조(회원) -----

1. (현행과 같음)

2. -----

-----제4조제1항제3호에-----

-----제4호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u><신 설></u> 3. ~ 9. (생 략)	-----. 3. <u>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u>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u> 4. ~ 10.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

-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공법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음.

[표 1] 「국가유공자단체법」에 근거한 공법단체 현황

(2024. 8. 기준, 단위 : 명)

단체명	설립일	설립 목적	회원	회원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63.8.12.	국가발전, 자활	전상군경, 공상군경	105,131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63.8.12.	전몰장병 유지계승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96,502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63.8.12.	순국자 유지계승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 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처	58,302
광복회	‘73.3.3.	민족정기 선양	애국지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8,898
4·19민주혁명회	‘73.3.3.	4·19이념 계승	4·19혁명부상자	135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73.3.3.	4·19이념 계승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의 유족	242
4·19혁명 공로자회	‘01.9.17.	4·19이념 계승	4·19혁명공로자	258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89.1.1.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재일학도의용군인	2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92.4.10.	국가·사회 기여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54,868

□ 한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에 해당하는 유족의 처, 미성년자는 제외)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로 두고 있음.²⁾

2) 「국가유공자단체법」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 이에 대하여,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표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구성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9월)
전몰군경 유족	30,443 (36.2)	31,004 (34.8)	31,204 (33.4)	31,266 (32.3)
전상군경 유족	37,592 (44.7)	41,680 (46.8)	45,500 (48.7)	48,514 (50.1)
순직군경 유족	10,445 (12.4)	10,313 (11.6)	10,188 (10.9)	10,050 (10.4)
공상군경 유족	5,538 (6.6)	6,053 (6.8)	6,622 (7.1)	7,009 (7.2)
합계	84,018	89,050	93,514	96,839

* 괄호값은 전체 회원 수에서 각 유형의 회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중 순직군경 유족과 공상군경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 유족의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회원의 활동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기존 공법단체에서 특정 유형의 회원을 분리하여 새로운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현행 보훈단체들도 각 대상 및 직역별로 단체를 분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공법단체 설립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이는 기존 보훈단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보훈단체의 운영현황과 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한 논의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신규 공법단체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등 지원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바,³⁾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연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⁴⁾

□ 그 밖에, 개정안은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에 해당하는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려는 취지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될 경우 대한민국

3)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참고 1] 개정안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p. 12.).

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과 대상 회원이 중복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수정의견

조문	개정안	수정의견	비고
안 제3조제2호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u>제3호에</u>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2. ----- ----- ----- ----- ----- ----- <u>(제4호에</u> ----- -----. ----- ----- ----- ----- ----- ----- -----.	현행 제3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던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가 같은 조 제4호로 이동
안 제3조제3호	3.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3. ----- ----- ----- ----- -----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 등에 해당하는 자 제외

조문	개정안	수정의견	비고
	<u>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u> <u>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u> <u>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u> <u>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u> <u>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u> <u>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u> <u>에 관한 법률」 제5조제1</u> <u>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u> <u>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u> <u>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u> <u>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u> <u>우선한다.</u>	----- ----- -----<u>사람.</u> <u>(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u> <u>과 미성년자는 제외하</u> <u>다)</u>----- ----- ----- ----- ----- -----.	

□ 이상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신규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 유족의 활동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존 보훈단체의 분리 요구 증가 및 보훈단체 회원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인 보훈단체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련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4·19민주혁명회는 개정안에 반대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112

5) [참고 2]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p. 13.)

참고 1

개정안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⁶⁾

구 분			비 용 추 계					비 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순직 군경 유족 회	운 영 비	사무비	15,622	15,622	15,622	15,622	15,622	4 개 지 부
		중앙회 활동비	9,700	9,700	9,700	9,700	9,700	
		단체 행사비	8,900	8,900	8,900	8,900	8,900	
		지부운영비(383×3개×12월)	13,788	13,788	13,788	13,788	13,788	
		① 합계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인 건 비	② 중앙회 소계	인원 합계 8명	200,760	205,128	209,592	214,152	218,820
		중앙회 급여	회장(1명×2,200×12)	26,400	26,976	27,564	28,164	28,776
			부회장(1명×1,920×12)	23,040	23,544	24,060	24,588	25,128
			사무총장(1명×1,871×12)	22,452	22,944	23,448	23,952	24,468
			국장(2명×1,810×12)	42,936	44,376	45,336	46,320	47,328
			과장(1명×1,715×12)	20,580	21,024	21,480	21,948	22,428
			사원(1명×1,686×12)	20,232	20,676	21,120	21,576	22,044
			운전원(1명×1,798×12)	21,576	22,044	22,524	23,016	23,520
		③ 지부 소계	인원 합계 12명	327,984	335,136	342,432	349,872	357,504
		지부 급여	지부장(4명×1,751×12)	84,048	85,872	87,744	89,664	91,632
			국장(4명×1,704×12)	81,792	83,568	85,392	87,264	89,184
			과장(4명×1,692×12)	81,216	82,992	84,816	86,640	88,512
			사원(4명×1,686×12)	80,928	82,704	84,480	86,304	88,176
		④ 중앙회+지부 20명 급여 합계(②+③)		528,744	540,264	552,024	564,024	576,324
		⑤ 퇴직충당금 (중앙회+지부 급여 8%)		42,300	43,221	44,162	45,122	46,106
		⑥ 보험료 (중앙회+지부 급여 7%)		37,012	37,818	38,642	39,482	40,343
		⑦ 합계(④+⑤+⑥)		608,056	621,304	634,828	648,628	662,773
	총합(①+⑦)			656,066	669,314	682,838	696,638	710,783

자료: 국가보훈부

6) 운영비는 최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4년 편성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중앙회 및 지부 인원 산정은 비슷한 규모의 지부를 운영하는 단체들을 참고(인건비 증가율 연 2.2%)하여 자체 산정하였음.

참고 2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

단체별	의견
상이군경회	< 반대, 대안으로 명칭 변경 필요 > - 국가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단체 설립만이 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님 -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를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을 강화
전몰군경 미망인회	< 반대, 대안으로 명칭 변경 필요 >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를 ‘대한민국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유족회’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대한민국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미망인회’로 명칭을 변경 필요
전몰군경 유족회	< 반대 > - 순직군경유족회 설립 시 기존 단체와 대내외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본회 회원들은 고령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전체 회원의 약 8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10여 년 후에는 다시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개정안 제3조제3호 관련) 순직군경미망인과 공상군경미망인을 순직군경유족회에 포함시켜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분리하는 것이 되므로 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임. 또한 미성년자까지 순직군경유족회에 포함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반대함
월남전 참전자회	< 반대 >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에 반대하며, 이에 앞서 월남전참전자회 유족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함
4·19 민주혁명회	< 반대 > 전몰군경유족회는 순직·공상군경의 유족도 동등하게 회원자격이 있는 만큼 단체를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전몰군경유족회에서 미흡한 예우를 강화

자료: 국가보훈부